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 적립금 손실금 보전 충당 허용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71호)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4호)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6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법정 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충당 허용 및 손실금 보전 순서 명시	4
2. 외부전문가의 상근감사 선임 허용	11
3. 중앙회장 임기 4년 일원화	14
4. 부칙	17

I . 제안경위

【채현일의원안】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3.
3. 회부연월일 : 2026. 3. 16.

【고동진의원안】

1.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10.
3. 회부연월일 : 2026. 4. 13.

【이달희의원안】

1. 발 의 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26.
3. 회부연월일 : 2026. 5.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현일의원안】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수협·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안】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수협·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이달회의원안】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충당 허용 및 손실금 보전 순서 명시

개정안은 금고의 법정 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손실금 보전의 순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채현일·고동진·이달희 의원안 제35조).

현행	채현일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 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사업연도마다----- ----- ----- ----- ----- ----- ----- ----- ----- ----- -----법정적립금----- ----- -----.	① -----사업연도마다----- ----- ----- ----- ----- ----- ----- ----- ----- ----- ----- ----- -----.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	② -----손실금의 보전----- ----- -----	②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補填)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	② -----손실금의 보전(補填)----- ----- -----

현행	채현일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이달희의원안
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 거나 배당에 충 당하지 못한다.	----- ----- ----- -----.	1항에 따른 법 정적립금을 사 용하거나 배당 에 충당하지 못 한다.	----- ----- ----- -----.
③ 금고는 결손 의 보전(補填)과 불가항력에 의 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 다 잉여금의 10 0분의 20 이상 을 특별적립금 으로 적립하여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손 실금의 보전---	③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
⑤ 금고는 사업 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 립금, 임의적립 금의 순으로 이 를 보전하되, 잔 여손실금이 있으 면 이를 다음 사 업연도에 이월한 다.	⑤ ----- ----- ----- -----미처분 잉여금, 특별적 립금, 임의적립 금, 법정적립금 ----- ----- ----- -----.	⑤ ----- ----- ----- -----미처분 이월금, 특별적 립금, 임의적립 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	⑤ ----- ----- ----- -----미처분 이월금, 특별적 립금, 임의적립 금, 법정적립금 의----- ----- ----- -----.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	-----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법정 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¹⁾이나 해산의 경우로 제한하고 손실에 대하여는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만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금 보전시 법정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²⁾

또한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고 잔여손실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자본금을 감소시켜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하고 있음.

법정적립금은 금고의 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정 적립금의 사용

1) 대손금의 상각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등에 대한 손실 보전을 의미함

2)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4년간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수와 (누적) 손실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법정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법정적립금을 통상적인 손실금 충당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 및 손실금 규모]

(단위 : 억원, 개)

구분	2022	2023	2024	2025
법정적립금	22,042	24,715	26,387	27,363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수	47	433	783	697
(누적) 손실금 규모	-	-	17,468	19,063

현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발생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한 이유로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법정 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별 손실금 보전순서]

구분	현행	채현일의원안	고동진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손실 보전 순서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 →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미처분이월금 →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 회전출자금	미처분이월금 →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한편, 개정안들은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충당을 허용하면서도 손실 보전에 ‘미처분 이월금’ 또는 ‘미처분 잉여금’, ‘회전출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채현일의원안은 ‘미처분 잉여금’을 고동진·이달희의원안은 ‘미처분 이월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잔여손실금에 대하여만 이월을 규정하고 있고³⁾ 잉여금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미처분 잉여금’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겠음.

3)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4)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또한 고동진의원안은 회전출자금⁵⁾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농협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미누적), 가입금, 각종 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것⁶⁾과 달리 금고의 자본금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미누적)으로만 하고 있어⁷⁾, 회전출자금까지 손실금 충당에 허용하는 경우 금고의 자본금 감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회원에게 배당할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

「새마을금고법」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6)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7)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⑪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상호금융기관별 법정적립금 사용 및 손실금 보전순서]

구분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구별수협	신협
법정 적립금 사용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손실금 보전 또는 다른 조합에 양여	손실금 보전 또는 다른 조합에 양여	손실금 보전 조합 분할·해산
	「새마을금고법」 §35①	「농업협동조합법」 §70	「수산업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49②
손실 보전 순서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 자본적립금 → 회전출자금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 자본적립금	미처분잉여금 → 특별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법」 §35⑤	「농업협동조합법」 §68①	「수산업협동조합법」 §71①	「신용협동조합법」 §52①
손실금 충당허용	-	1957년~ (법 제정시~)	1962년~ (법 제정시~)	2024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타상호금융권은 손실금 발생시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업권 동일규제 차원에서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2. 외부전문가의 상근감사 선임 허용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고 임원의 결격 사유로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금감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여,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달회의원안 제21조제1항 단서).

현 행	이달회의원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u>상근이사는</u>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 ----- <u>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u>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⁸⁾ 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로 ‘회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⁹⁾

8)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외부 전문가의 선임이 가능한 상근이사와 달리 상근감사는 외부 전문가 선임이 불가능함.

그런데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조사하여 각종 법령이나 정관에 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금고의 구성원인 회원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회원 요건에 관하여 상근 감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2명의 감사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¹⁰⁾

9)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신협의 경우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¹¹⁾

지구별수협의 경우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²⁾

상근감사의 외부전문가 선임은 허용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근감사 채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금고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11)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3. 중앙회장 임기 4년 일원화

개정안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려는 것임(채현일의원안 제64조의2제6항).

[illegible]

기존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¹³⁾ 특정인이 장기간 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회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음.¹⁴⁾

그런데 법률 개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중앙회장의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1회 재임할 수 있으므로¹⁵⁾ 재임기간이 4년 미만으로 짧아져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당선된 선거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려 취지로 이해됨.¹⁶⁾

13) 종전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14) 현행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15)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현재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중임·연임 여부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앙회장 등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상호금융기관별 중앙회장 등 임기]

구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현행	개정안				
임기	4년 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 : <u>남은 임기</u>	4년	4년	4년	4년	4년
중임 연임	중임X 연임X		중임X 연임X	중임O 연임X	중임O 1회연임	중임O 1회연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장의 책임감 있는 공약 이행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6) 참고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제6항 및 제23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금고중앙회장은

4. 부칙

채현일·고동진·이달희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들은 시행일만을 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 상근감사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중앙회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 6788-5350